

가축전염병 분류의 새로운 개편

박재명*, 이종진, 곽학구¹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¹
(접수 2007. 7. 01, 개재승인 2007. 9. 15.)

Reclassification of an legal communicable disease

Jae-Myoung Park*, Jong-Jin Lee, Hak-Koo Kwak¹

Northern Branch, Chungbuk Veterinary Service Laboratory, Chungju, 380-230, Korea
¹Chungbuk Veterinary Service Laboratory, Chungwon, 363-931, Korea

(Received 01 July 2007, accepted in revised from 15 September 2007)

Abstract

The legal communicable diseases are classified two group, 62 diseases in the existing domestic animal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There is problem that standards of administrative measure are unjustly suspected when infectious disease outbreaks between two groups. Therefore, A reclassification of many diseases should be diversified, the standards of administrative measure at the infectious diseases outbreak should be desired. Also, It suggest that central government should mandate local government to be able to assign legally designated disease about specific endemic diseases.

Key words: Legal communicable disease, Reclassification, Endemic disease, Mandate

*Corresponding author

Phone : +82-043-220-5620 Fax : 2-043-220-5629

E-mail : jmpark@cb21.net

개요

강학상(講學上) 전염병이란 병원체가 인간이나 동물에 침입하여 그 장기(臟器)에 자리

잡고 증식하는 것을 총칭하여 감염(感染)이라고 하며, 이런 감염에 의한 증세의 발현을 감염증이라고 한다. 감염에는 전혀 증세가 없이 면역만 생기는 불현성 감염과, 증세가 나타나

는 현성 감염이 있으며 때로는 감염증과 전염병을 동의어로 쓰이기도 한다¹⁾. 반면, 행정법상 가축전염병이라 함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소 등 15개 축종(소·말·나귀·노새·면양·산양·칠면조·오리·거위·돼지·

개·닭·꿀벌·사슴·토끼)과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2개의 축종(고양이·타조)에서 발생하는 제1종가축전염병 15종과 제2종가축전염병 29종, 그리고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에서 정한 18종의 전염병을 의미 한다²⁾(표1).

표 1. 현행 가축전염병

분류	해당 가축전염병
제1종 (법률)	우역·우폐역·구제역·가성우역·블루텅병·리프트계곡열·럼프스킨병·양두·수포성구내염·아프리카마역·아프리카돼지콜레라·돼지콜레라·돼지수포병·뉴캣슬병·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 -15종-
제2종 (법률)	탄저·기종저·부루세라병·결핵병·요네병·소해면상뇌증·소유행열·소아까바네병·큐열·돼지오제스키병·돼지일본뇌염·돼지펫센병·스크래피·비저·말전염성빈혈·말전염성동맥염·구역·말전염성자궁염·동부말뇌염·서부말뇌염·베네주엘라말뇌염·추백리·가금티프스·가금콜레라·닭마이코플라즈마병·저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광견병·사슴만성소모성질병·부저병 -29종-
제2종 (부령)	소전염성비기판염·타이레리아(Theileriosis, 타이레리아 팔바 및 애눌라타에 한한다)·바베시아병(Babesiosis, 바베시아 비제미나 및 보비스에 한한다)·아나플라즈마(Anaplasmosis, 아나플라즈마 마지나레에 한한다)·소백혈병·소렙토스파라병(Leptospirosis)·돼지전염성 위장염·돼지단독·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돼지유행성설사·돼지위축 성비염·닭뇌척수염·닭전염성후두기관염·닭전염성기관지염·마렉병(Marek's disease)·닭전염성F낭병·오리바이러스성간염·오리바이러스성장염 -18종-

이와 같이 가축전염병을 법으로 제정한 목적은 동 질병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하여 전염병의 발생이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²⁾.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과 제2종가축전염병의 분류의 기준은 OIE에서 정하는 전염성이 가장 강한 list A급 질병 15종을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규정하였고³⁾, 제2종 가축전염병은 국내발생의 빈도, 인체감염의 여부, 축산업의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서 가축전염병예방법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 각 전염병群별 방역규정을 살펴보면 제1종가축전염병에 대한 정의가 없이 동 질병군(疾病群)에 대해 '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명령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군수가 살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그중에도 특정질병(6종: 우역·우폐역·구제역·돼지콜레라·아프리카돼지콜레라·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은 자체 없이 살처분을 명하거나 도태명령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제1종가축전염병 중에서도 각 질병별로 조치사항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제2종가축전염병의 경우도 질병 군의 특성에 대한 정의가 없고, 질병별 처리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동일 질병에 대해 각 자치단체별 방역규모 또는 방식 및 사후관리에 있어서 각기 다른 방법을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표 2).

이에 비해 사람의 전염병예방법은 전파속도, 공중보건상 위해정도, 예방접종상태 등을 고려하여 개괄적인 질병 분류하고 있는데, 국가에 의해 환

자격리가 필요한 질병(1군, 6종), 예방접종이 필요한 질병(2군, 9종), 모니터링 및 접종 예방 홍보가 필요한 질병(3군, 18종), 방역책책 긴급 수립이 필요한 질병(4군, 15종), 유행여부 조사 및 감시대상 질병(지정 전염병 9종) 등 5개 군으로

정의하여 분류하였고, 각 群별 신고방법, 처리방법 및 개괄적인 조치사항에 대한 SOP성격의 표준 규정을 만들어 각 군별 즉시 신고질병인지, 경과 후 신고가능한지 등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비해 비교적 구체화 되어있는 점과 비교된다^{4,5)}(표3, 4, 5).

표 2. 가축전염병 군별 조치사항

근거 및 주요 조치사항	1종	2종	지정	하위법령
11.12.14.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즉시	즉시	즉시	
13. 역학조사	우역, 우폐역, FMD, ASF, HC, HPAI	BSE	×	
15. 검사, 주사, 약물목욕, 투약 (공동방역의 실시) - 소유자+농협, 방역본부, 수의사회 - 소유자+수의사회(주사/표시) - 소유자+부령에 의한 단체 중 2이상	구제역, HC	AD	×	부령제18조
	×	광견병	×	
	×	BR, TB, PD, FT	×	
18. 질병관리등급의 부여 - 검사증명서 휴대의무 - 예방접종 표시의무	FMD, HC,	ND, BR, TB, AD	×	부령19조 ①의 1
	우역, FMD, HC	광견병	×	부령19조 ①의 2
19. 사육시설 폐쇄 - 폐쇄 - 사육제한 명령	○ 우역, 우폐역, FMD, ASF, HC, HPAI	△ ND, BSE, CWD	×	대통령령제6조①
	○	○	○	
20. 살처분 명령(재량) - 지역내 지체없이 살처분 - 살처분을 명령(강제)	○	△ BR, TB, AD	-	대통령령제7조①
	우역, 우폐역, FMD, HC, ASF, HPAI	×	×	
	우역, 우폐역, FMD, HC, ASF, HPAI	BR, TB, AD	-	
21. 도태의 권고 - 도태목적도축장 출하	○ (살처분 동거가축)	△ BR, TB, AD		부령제24조①의 1, 2
22. 사체처분의 제한 - 열처리 재활용	×	△ TB, AD, BR		대통령령 제8조
24. 발굴의 금지	3년	3년 탄저, 기종저 20년		
28. 2종전염병의 준용	법제19조제①항1호, ②항, ③항; 제20조①항 본문, ②항; 제21조			

* FMD (Foot and Mouse Disease), ASF (African Swine Disease), HC (Hog Cholera), HPAI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AD (Aujesky's Disease), BR (Brucellosis), TB (Bovine Tuberculosis), PD (Pullorum Disease), FT (Fowl Typhoid), CWD (Chronic Wasting Disease), ND (Newcastle Disease)

표 3. 사람의 법정전염병 분류기준

분류	분류기준(법령상 정의)	분류근거
제1군 전염병	전파속도가 빠르고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정도가 너무 커 발생 또는 유행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질병	전염병예방법 제2조 ①의 1
제2군 전염병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또는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 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질병	전염병예방법 제2조 ①의 2
제3군 전염병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그 발생을 감시하고 예방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전염병	전염병예방법 제2조 ①의 3
제4군 전염병	국내에서 새로 발생한 신종전염병 증후군, 재출현전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유행 전염병으로서 방역 대책의 긴급한 수립이 인정되는 전염병	보건복지부령
지정 전염병	제1군 내지 제4군 전염병 외에 유행여부의 조사를 위하여 감시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염병	보건복지부령

표 4. 사람의 법정전염병 종류

분류	종 류
제1군 전염병	콜레라 · 폐스트 ·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 세균성이질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6종-
제2군	디프테리아 · 백일해 · 파상풍 · 홍역 · 유행성이하선염 · 풍진 · 폴리오 · B형간염 · 일본뇌염 · 수두 (10종)
제3군	말라리아 · 결핵 · 한센병 · 성병 · 성홍열 · 수막구균성수막염 · 레지오넬라증 · 비브리오패혈증 · 발진티푸스 · 발진열 · 쯔쯔가무시증 · 렙토스피라증 · 브루셀라증 · 탄저 · 공수병 · 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출혈열) · 인플루엔자 · 후천성면역결핍증 (AIDS) (18종)
제4군	황열 · 뎅기열 · 마버그열 · 에볼라열 · 라싸열 · 리슈마니아증 · 바베시아증 · 아프리카수면병 · 크립토스포리디움증 · 주혈흡충증 · 요우스 · 핀타 · 두창 · 보툴리눔독소증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야토병 · 큐열 · 급성출혈열증상 · 급성호흡기증상 · 급성설사증상 · 급성황달증상 또는 급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신종전염병증후군 (19종)
지정 전염병	A형 간염 · C형 간염 ·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상구균 · 샤가스병 · 광동주혈선충증 · 유극악구충증 · 사상충증 ·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변천과정

우리나라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근대 역사는 1961.12.30 조선가축전염병예방령과 조선우결핵병예방령을 폐지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법률907호 1961.12.30)을 제정하여 근대적인 법령을 마련하였다. 그동안 국가의 경제·사회적 여건의 변화와 질병발생 상황에 맞추어 현재까지 12회의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현

재는 2005.3.31 일부 개정법률(법률 제7434호)을 적용하고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은 가축의 전염성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과 대통령령·부령으로 구성되었는데 질병의 특성과 경제적 손실,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그때마다 변경하여왔다. 1961년 제정당시 23종의 가축전염병을 법정전염병으로 지

정한 이래 1982.4.1(법률 제3548호)에 의거 제1종과 제2종가축전염병으로 구분하여 지정 했으며, 1995.1.5(법률 제4885)호에 의해 부령에 의해 제1종과 제2종가축전염병을 추

가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에 위임하기 시작 했으며, 2002.12.26(법률 제6817호)는 제2 종가축전염병만 부령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다⁶⁾(표 6).

표 5. 법정전염병의 관련조치 사항

분류	신고와 등록의 의무	정기예방접종	예방조치/건강진단
제1군 전염병	환자발생 및 발생우려시 신고인 : 진료의사, 가족, 기관장 신고시기 : 즉시신고 신고접수처 : 보건소장→시장	디프테리아와 보건 복지부가 지정하는 종류	교통차단, 집합제한, 음식 물관리, 소독, 격리 (원인균이 나오지 않을 때 까지)
제2군 전염병	1종과 동일	백일해, 파상풍, 폴 리오, 홍역, 기타 장관이 지정한 것	
제3군 전염병	보건소에 등록 매월보고 : 신고접수처는 1종, 2종 전염과 동일 발병7일 이내 신고	결핵, B형간염	- 발병기간 동안 취업제한 - 결핵 : 1년 1회 - 나병 : 1년 1회 - 성병 : 매개우려인 중 업종에 따라 주1회~6개월에 1회
제4군 전염병	즉시신고		
지정 전염병	7일 이내 신고		

표 6. 가축전염병의 분류 및 개정 과정

개정일	법률번호	주요내용				비 고
		계	1종	2종	지정	
1961.12.30	법률 제907호	23	23	—	—	
1982.4.1	법률 제3548호	39	29	10	—	1,2종으로 구분
1984.12.31	법률 제3762호	"	"	"	—	
1994.12.11	법률 제4796호	41	29	12	—	
1995.1.5	법률 제4885호	51	26	19	6	부령으로 1,2종 지정 위임
1996.8.8.	법률 제5153호	54	26	19	9	
1997.12.13	법률 제5453호	"	"	"	"	
1999.3.31	법률 제5952호	57	15	15	27	OIE 질병분류 참고
2000.1.28	법률 제6224호	"	"	"	"	
2000.12.29	법률 제6305호	"	"	"	"	
2001.1.26	법률 제6379호	"	"	"	"	
2002.12.26	법률 제6817호	62	15	29	18종	부령으로 2종만 지정 위임
2005.3.31	법률 제7434호	"	"	"	"	

1961년도 제정당시에는 우역·탄저·기종저 등 23종의 전염병을 법정가축전염병으로 규정하였고, 1982.4.1 법률 제3548호에 의거 우역·탄저·기종저 등 29종을 제1종가축전염병으로, 가성피저·수포성구내염 등 10종을 제2종가축전염병으로 변경하여 처음으로 제1종과 2종의 질병군별(疾病群別)로 관리하였다. 1994.12.22 법률 제4796호는 구역·아프리카마역을 제2종가축전염병을 변경하였으며, 1995.1.5 법률 제4885호로 제1종가축전염병에서 제1종가축전염병 26종, 제2종가축전염병은 19종으로 변경하되 농림수산

부령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1,2종 모두 하위법령에서 추가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두어 1995.8.1 농림부령으로 6종이 추가되었다. 또한 1997.5.10 농림부령 1256호에 따라 9종으로 늘었으며, 1997.9.7 27종의 농림부령에 의한 제2종가축전염병을 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2002.12.26 법률 6817호에 의거 으로 제1종가축전염병 15종, 제2종가축전염병 29종으로 변경하고, 다시 2003.9.24 농림부령에서 정하는 제2종가축전염병을 18종으로 지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표7, 8).

표 7. 제1종 가축전염병의 변천과정

연도별	계	추가내역	제외내역
1961	23종 (신설)	우역·탄저·기종저·우폐역·비저·구제역·가성피저·마전염성빈혈·부루세라병·우유행열·유행성뇌염·결핵병·피로푸라즈마병·아나푸라즈마병·출혈성페혈증·광견병·돈코레라·돈단독·뉴캣슬병·가금페스트·가금코레라·추백리·부저병(23종)	
1982	29종 (신설)	바베시아병·블루텅병·아프리카돼지콜레라·돈수포병·특소프라즈마병·가성광견병·가금인플루엔자·닭전염성기관염(8종)	가금페스트·가성피저(2종)
1995	26종	리프트계곡열·럼프스킨병·가성우역·양두·수포성구내염**·아프리카마역·돼지텃센병** ^(7종)	우행열·유행성뇌염·타이레리아·바베시아·아나푸라즈마·돼지단독·출혈성페혈증·특소프라즈마·가성광견병·닭전염성기관염(10종)
1999	15종	-	탄저*·기종저*·비저*·마전염성빈혈*·부루세라병*·결핵병*·광견병*·가금콜레라·추백리*·부저병*·돼지텃센병*(11종)
2002	15종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1종)	가금인플루엔자(1종)

*1종→2종 **2종→1종

분류기준 및 문제점

가축전염병의 지정 또는 분류기준은 당시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의 변화와 질병발생 상황에 맞추어 변화된 것이며⁵⁾, 1961년 제정 당시 지정한 23종의 가축 전염병의 분류 또는 지정은 20여년 동안 변화가 없다가, 1982년 처음으로 제1종과 제2종을 구분하여 39종의 법정전염병으로 대폭 확대하여 국가관리

를 하였다. 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도입후에서 발생한 기생충성 질병(타이레리아병, 아나풀라즈마병 등)이 축산업계의 화두가 되었고, 이를 계기로 외래성 질병에 대한 인식변화로 이들 질병에 대한 관리를 보강한 것으로 판단된다(표6). 또 1995년은 법률에 의해서만 정했던 가축전염병을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령으로 위임하여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전염병의 관리항목 지

정에 유연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1999년 구제역이 대만과 영국에 발생하여 재난성 가축전염병은 그 나라의 축산기반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 깊이 인식하여,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규정한 List A 심급성 전염병을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기타 전염병은 2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여 세계화 추세에 맞게 지정하여 1999.3.31. 개정된 법률 제5952호

에 이르기까지 그 기초의 변화는 없는 것 같다. 이에 제1종과 제2종가축전염병의 분류 방법상 고찰 결과 전염속도의 기준, 인체보건과 역학관계, 전염병 발생시 조치사항 또는 모니터링, 예방접종 허용여부, 진단방법의 난이도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해 분류했다기보다 단순히 OIE에서 정한 질병분류에 의존한 측면이 있다.

표 8. 제2종 가축전염병의 변천과정

연도별 계	추가내역	제외내역
1982 10	가성피저 · 수포성구내염 · 돼지전염성위장염 · 돼지 햇센병 · 돈두 · 닭마이코플라즈마병 · 가성결핵 · 닭 뇌척수염 · 소토스파이라병 · 소백혈병 (10종)	
1994 12	구역 · 아프리카마역 (2종)	
1995 25	소유행열* · 소아까바네병 · 소이바라기병 · 츄산 병 · 마전염성동맥염 · 돼지오제스키병* · 돼지단독 * · 돼지일본뇌염 · PRRS · PED 등 22종	가성피저 · 수포성구내염 · 돼지햇센 병 · 돈두 · 닭마이코플라즈마 · 소렙 토스파이라 · 소백혈병 등 9종
1996 28	말전염성자궁염 · 소해면상뇌증 · 스크래 피 · 마전염성유산 (4종)	마전염성유산 (1종)
1999 42	탄저*, 기종저*, 부루세라병*, 결핵병*, 소해면상 뇌증, 비저*, 마전염성빈혈*, 햇센병*, 부저병*, 구 역, 광견병*, 추백리* 동부말뇌염 등 (16종)	이바라기병, 츄잔병 (2종)
2002 47	저병원성인플루엔자, 마렉병, 전염성F낭병, CWD, 오리바이러스성간염, 오리바이러스성 장염 (6종)	요네병

*1종→2종,

개별 질병의 방역 관리측면에서도 질병군별 관리가 강조되기보다 개별 질병별로 관리토록 규정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법 집행 현장에서 법적정의 보다 추상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법을 집행하는 일선기관에서 전염병의 관리 또는 집행방법상 혼란과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는 면이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구체적으로 현행법령에서 전염병 발생했을 경우 거시적인 차원에서 제1종과 제2종가축전염병은 실처분 명령과 사육시설의 폐쇄 가능성 여부, 사체의 재활용 여부 등이 두

드러진 차이점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장에서 구체적인 사례로 볼 때 질병군별 보다는 개별적 질병에 따라 조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때에 따라서는 제2종가축전염병이 제1종가축전염병 보다 더욱 고강도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개별적 SOP를 가지고 있는 부루세라병 · 추백리 · 가금티푸스 등은 방역강도가 제1종가축전염병보다 더욱 엄격한 통제를 기하는 사례로 볼 때 1,2종의 구분적 의미가 퇴색되었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제2종 가축전염병 발생의 경우 발생보고에 따른 통계

조사 관리와 최소한의 방역조치로 그치는 전염병의 경우가 많다. 이에 비해 사람의 '전염병 예방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달리 각 군별 전염병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했으며 전파속도, 공중보건상 위해정도, 예방접종 상태 등에 따라 구체화·세분화 분류하여(표 3~5) 관리하는 것과 대비된다.

개선방향

가축전염병은 인체 전염병보다 더욱 전염력이 강한 질병이 많고 그 숫자에 있어서도 인체 전염병의 숫자를 능가하고 있으며, 산업화에 의한 가축의 대량생산과 무역자유화에 따른 다양한 외래성 전염병의 발생우려가 높아지는 등 환경도 긍정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초기 법정전염병은 주로 일본에서 쓰고 있던 법령을 참고했으나 이후 여러 번의 개정을 통하여 현실에 맞게 재정비를 거듭하여 현재까지 발전을 거듭하여왔다. 그러나 향후 예상되는 축산업의 환경변화와 더불어 가축의 질병은 단순히 가축의 문제가 아닌 국민보건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수의공중보건학적 의미에 걸맞는 가축전염병을 현실성 있게 정리해서 법률에 충분히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차제에 질병의 전염력, 발생시 사후관리 방법, 예방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전염병의 분류를 세분화하고, 각 질병군별 법령에 의한 정의, 각 군별 조치사항을 정비하여 예방 및 발생에서 종식까지 표준화된 조치가 요구된다. 예를 들면 제1종 가축전염병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의 법 목적과 가장 일치하는 질병, 즉 전파 속도가 빨라 축산업의 발전에 저해하며, 국제 교역에 영향을 주는 질병으로 종식방법은 이동제한, 예방접종과 살처분 등을 실시하고, 제2종은 사람의 공중보건에 관계된 인수공통전염병으로 국민공중위생에 영향을 주는 질병으로 보건복지부와 공조가 필요한 질병으로 종식방법은 이동제한, 살처분 대상 질병이며, 제3종은 국내 예방접종을 시행중인 질병으로 농가 자율방

역으로 예방 가능한 질병이나 발생시 전염력이 비교적 높아 축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병군으로 이동제한과 소독을 병행해서 일정기간 동안 추가 발생이 없을 경우 종식, 제4종은 국내 예방접종이 시행되지 않고 국내 발생이 없으나, 특히 국가에서 특별히 관여하여 모티터링이 필요한 질병, 제5종은 가축질병으로서 농가 피해가 크지만 자율 방역에 의해 충분히 예방가능 한 질병으로서 발생통계조사로 홍보위주의 질병으로 분류해 볼 만하다. 또한 특정의 지방에서만 발생하는 지방병 또는 특정 지역에 한정적으로 방역조치가 필요할 경우 당해 지방정부에서 조례로 전염병 지정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위임근거를 두어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료된다⁵⁾.

참고문헌

1. 두산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134804>
2. 법제처. 1981. 대한민국현행법령 제28(1) 가축전염병예방법. 한국법제연구원. 서울. 295-341
3. 김효룡. 일본의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1997. 대한 수의사 회지 33(10) :619-623.
4. 법제처. 1981. 대한민국현행법령 제37(2) 전염병예방법. 한국법제연구원. 서울. 587-646
5. 김정순. 1997. 우리나라 법정 전염병의 재분류. 대한의사협회 447 : 386- 390
6.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